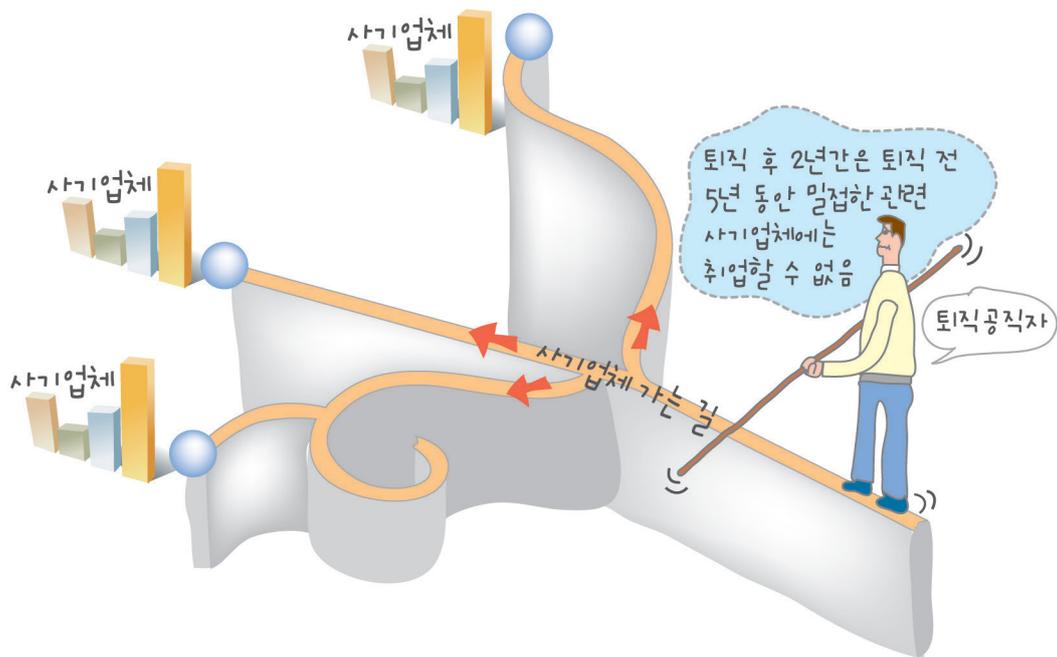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등에 관한 **안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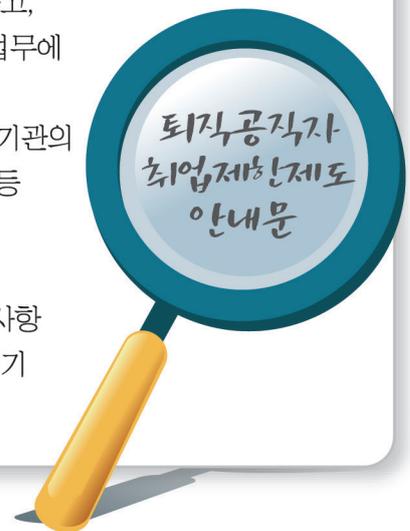


## 안녕하십니까?

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후 2년간은 퇴직 전 5년 동안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심사대상 사기업체 및 협회에는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습니다.

퇴직 후 2년 이내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한 모든 공직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으며, 퇴직한 모든 공직자 및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행위 또는 알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유념하시어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례/Contents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8조 및 시행령 제31조 내지 제34조

## ※ 취업의 범위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를 불문하고 사기업체등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사기업체등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 대상

## 재산등록 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 공무원의 경우 보통 4급 이상
- 감사·조세·건축·토목 등 인허가부서의 경우 5~7급 공무원도 해당

제한  
내용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일정규모이상의 사기업체등 사이에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퇴직 후 2년간 취업을 제한

##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사기업체등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시행령 제32조 제2항)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 또는 '취업승인 심사' 에서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으로 결정된 경우 취업할 수 있음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업체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심사없이 취업할 수 있음

- \* 변호사 → 법무법인등, 회계사 → 회계법인, 세무사 → 세무법인
-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차관, 그 밖의 중앙 행정기관의 장의 직위에서 퇴직한 자는 자격증이 있더라도 취업심사를 받고 취업하여야 함



**대상업체**  
(이하  
사기업체등)

- ①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
- ②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③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
- ④ ①에 따른 사기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협회)

○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등 조회 방법

- 안전행정부 홈페이지([www.mospa.go.kr](http://www.mospa.go.kr)) → 업무안내 → 장·차관 직속기관 선택 후 공직윤리 클릭하여 확인
- 대한민국전자관보(<http://gwanbo.korea.kr/main.jsp>)

## 본인 처리업무 취급금지!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 18조의2제1항 및 제29조

대상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변호사법과 같이 개별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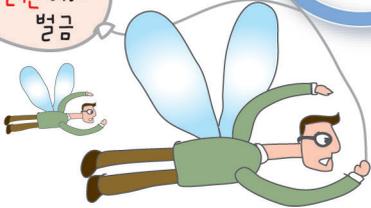
내용

본인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일정업무

(법제 17조제 2항 각 호) 등 퇴직 후 영구히 취급 금지

위반시  
제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본인처리 일정업무  
취급금지!위반시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재산공개대상자 업무취급금지!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 18조의 2 제2항, 제 18조의 3, 제 30조 및  
시행령 제 35조의 3

대상

재산공개대상자였던 퇴직공직자

\* 장·차관, 1급 이상, 지방자치단체장, 공기업 기관장 등

내용

퇴직 후 1년 동안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사기업체등에 대해 처리하는 일정업무  
(법제 17조제 2항 각 호) 취급 제한위반시  
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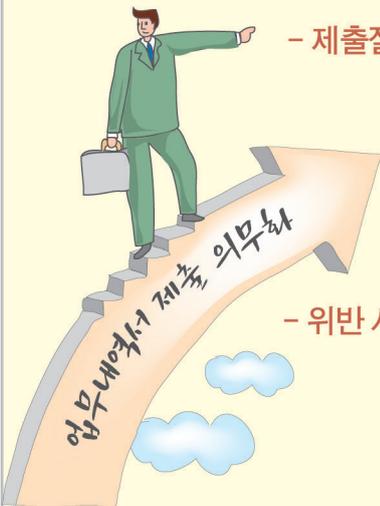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사기업체 관련  
일정업무 취급제한!위반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일정업무(법 제17조 제2항 각 호)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사기업체등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시행령 제32조제2항)

### 업무내역서 제출 의무



- 제출시기 : 퇴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 제출내용 : 취업한 사기업체등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근무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 업무취급 승인을 받은 경우 취급 업무내역 포함
- 제출절차 : ①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② 소속기관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제출  
 ③ 소속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장은 검토의견서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  
 ※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않음
- 위반 시 제재 : 업무내역서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부과  
 ※ 다만, 변호사법 등 타 법률에 따라 유사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자료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된 경우는 업무내역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 03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등

##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행위 금지!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 18조의 4 및 시행령 제 35조의 4

대상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내용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위반시  
제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정한 청탁  
알선행위 금지!



## 재직공직자 등의 행위 금지!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 18조의 5, 제 22 조제 17호, 제 23 조

대상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내용

재직자: 재직 중 퇴직 전 5년간 처리한 일정업무와 관련 있는 '사기업체등' 에 취업 청탁 금지  
기관: 재직자에 대해 퇴직 전 5년간 취급한 업무와 관련 있는 '사기업체등' 으로 취업 알선 금지

위반시  
제재

재직자: 징계의결 요구  
기관: 시정권고

재직자 등의  
취업청탁·알선  
금지!

※ 취업제한 등 위반시 제재사항 (법 제22조, 제23조, 제29조, 제30조)

구 분	벌칙 징계 및 과태료	위반 내용
취업 제한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제한 사기업체등에 취업한 경우</li> </ul>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기업체등의 장이 취업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li> </ul>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제한여부 확인 없이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에 취업한 경우</li> <li>■ 취업제한위반자에 대한 해임요구를 사기업체등의 장이 거부한 경우</li> </ul>
업무 취급 제한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일정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경우</li> </ul>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산공개대상자가 퇴직 후 1년간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일정 업무를 취급한 경우</li> </ul>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산공개자였던 퇴직자가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li> </ul>
행위 제한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한 경우</li> </ul>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직자가 부정한 청탁·알선을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li> <li>■ 취업심사대상자가 재직중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한 경우</li> </ul>
	시정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속기관의 장이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를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체등에 취업을 알선하는 경우</li> </ul>